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08 호 2023. 6. 29.(목)

##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9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0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3

##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9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10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4회[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5회[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승인사항 고시].....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6회[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7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8회[하천점용 허가 고시]..... 3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9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38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894회[공영주차장 무단 점유 적치물 이동명령(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3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01회[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공고]..... 4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15회[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19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렬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 단서조항 삭제 :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일원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701	472	20	52	36	121(4)
	정무직		1	1				
	일반직		699	470	20	52	36	121(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일           직	계		699	470	20	52	36	121(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1	24	3	4	2	8
		행정	<u>28</u>	15	3		2	<u>8</u>
		행정/사회복지	<u>2</u>	2				<u>0</u>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u>0</u>					<u>0</u>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46	105	6	11	7	17
		행정	62	46	5	1	1	9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3				8
		행정/사서	4	0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3	3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7	7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2	2				
		운전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7			7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소계	227	169	6	16	10	26
		행정	102	76	6	1	4	15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서	3				3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4	4				
		행정/학예연구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5	8				7
		사서	3	0			3	
		공업	3	3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위/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위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30	30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2	2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212	125	5	19	11	52	
		행정	72	40	2			30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0	0					
		행정/농업	1	1				0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0	0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운전	2	2					
		세무	7	7					
		전산	3	2				1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0				3	
		사서/공업	1					1	
		공업	6	2			1	3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3	3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	1	1					
		농업	1	1					
		보건	7	3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5					7	8
		시설	21	21					
		시설/전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방송통신	2	1				1	
		운전	8	5		1	2		
		방재안전	1	1					
		속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67	42	0	1	6	18(4)	
		행정	28	15			1	12(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세무	2	2					
		사회복지	8	6					2
		사서	4	0				4	
		속기	0			0			
		공업	3	3					
		공업/환경	1	1					
		녹지	1	1					
		보건	2	2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5	5					
		방송통신	1	1					
		운전	0			0			
정 직	계		1	1					
	6급	소계	1	1					
	상당	비서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변동없음(701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변동없음

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5급 : 변동없음

- 동 : 변동없음(행정 증2, 행정·사회복지 감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감1)

2) 6급 : 감3명

- 본청 : 감3명(행정 감2, 시설 감2, 운전 증1)

3) 7급 : 증7명

- 본청 : 증7명(행정 증8, 시설 증2, 행정·세무 증1, 행정·사회복지 감1, 행정·시설 감1, 공업 감1, 운전 감1)

4) 8급 : 증2명

- 본청 : 변동없음(사회복지 증1, 행정·보건 감1, 행정·공업 감1, 해양수산 감1, 행정·해양수산 증1, 공업 증1)

- 의회사무과 : 증2명(운전 증1, 속기 증1)

- 동 : 변동없음(행정·농업 감1, 행정·농업·해양수산 증1)

5) 9급 : 감6명

- 본청 : 감4명(행정 감4, 사회복지 감1, 시설 감1, 행정·시설 증1, 행정·세무 증1)

- 의회사무과 : 감2명(운전 감1, 속기 감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2까지 및 별표 5부터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 합계			472		
기획재정국	<b>국 합계</b>		<b>112</b>		
	기획예산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b>7</b>	행정 <b>6</b> , 행정/시설1
			7급	<b>10</b>	행정 <b>9</b> , 시설1
			8급	<b>4</b>	행정4
			9급	0	
기획재정국	미디어 정보과	<b>계</b>	<b>18</b>		
		일반직	소계	<b>18</b>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전산1, 방송통신1
			7급	8	행정1, 행정/임기제 행정3, 전산2, 방송통신2
			8급	4	행정/전산1, 전산2, 방송통신1
	9급		<b>1</b>	방송통신1	
기획재정국	경제 일자리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8	행정7, 공업1
			8급	3	행정3
	9급		2	행정2	
기획재정국	회계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공업1
			7급	<b>10</b>	행정 <b>6</b> , 행정/시설1, 공업2, 운전1
			8급	<b>2</b>	행정 <b>1</b> , 행정/운전1
	9급		1	행정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기획재정국	세무1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세무2, 세무2
			7급	6	행정/세무2, 세무4
			8급	4	세무4
			9급	3	행정/세무2, 세무1
기획재정국	세무2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세무3, 세무1
			7급	5	행정/세무1, 세무4
			8급	5	행정/세무2, 세무3,
			9급	2	행정/세무1, 세무1
행정지원국	국 합계			108	
	총무과	계		24	
		정무직		1	구청장
		일반직	소계	22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7	행정7
			8급	6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운전2
			9급	0	
별정직	소계	1			
	6급상당	1	비서1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세무1, 행정/공업1
			7급	6	행정5, 행정/임기제 행정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5	행정3, 행정/임기제 학예연구1, 시설1
			8급	6	행정3, 행정/시설2, 보건1
		9급	0		
행정지원국	교육 청소년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5	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1
			8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공업1	
행정지원국	관광진흥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3, 시설1
			8급	4	행정2,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시설1
		9급	0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5급	1	시설1
			6급	5	행정2, 시설3
			7급	8	행정4, 행정/시설1, 시설3
			8급	6	행정2, 시설3, 시설/전산1
		9급	7	행정5, 시설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환경국	<b>국 합계</b>		<b>120</b>		
	복지정책과	계	<b>18</b>		
		일반직	소계	<b>18</b>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5	행정1, 사회복지4
			8급	<b>5</b>	행정1, 행정/사회복지1, <b>사회복지3</b>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복지환경국	노인 장애인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b>4</b>	<b>행정2</b> ,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b>5</b>	<b>행정2</b> , 사회복지2, 시설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3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계	25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1,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1
			7급	<b>9</b>	<b>행정3</b> , 행정/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 임기제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2
			8급	<b>8</b>	행정1, 행정/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 임기제행정/사회복지1, <b>사회복지1</b>
9급	<b>3</b>	<b>행정2, 사회복지1</b>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4	행정/농업/해양수산1, 농업2, 해양수산1
			7급	9	행정1, 농업3, 시설1, 농업/수의/해양수산1, 수의1, 해양수산1, 시설/해양수산1
			8급	6	행정/농업1, 농업/해양수산1, <b>해양수산1</b> , 농업1, 시설/해양수산1, <b>행정/해양수산1</b>
9급	1	행정/농업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환경1, 보건2, 공업/환경1
			7급	9	행정1, 공업/환경2, 보건4, 환경2
			8급	5	행정/환경1, 공업/환경1, 보건2, 행정/환경/공업1
		9급	3	보건2, 공업/환경1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행정/환경1, <u>운전2</u>
			7급	3	행정2, 환경1
			8급	7	<u>행정3</u> , 행정/환경1, 운전3
		9급	0		
<u>국 합계</u>				<u>132</u>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행정/시설1, 방송통신1
			7급	6	행정1, 행정/시설1, 시설1, 시설/방재안전1, 방송통신2
		8급	7	행정3, 행정/시설1, 시설2, 임기제 방재안전1	
9급	0				
안전건설국	건설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5급	1	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1
			7급	9	행정2, 시설6, <u>전기운영1</u>
			8급	10	행정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시설6, 공업1,
		9급	4	공업2, 시설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안전건설국	도시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시설1
			6급	<u>5</u>	행정/시설2, 시설3
			7급	<u>9</u>	행정1, 시설6, 시설/임기제시설2
			8급	5	시설5
			9급	1	시설1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녹지1
			6급	5	행정/녹지3, 행정/녹지/시설1, 녹지1
			7급	7	행정1, 녹지5, 농림운영1
			8급	5	녹지3, 녹지/시설2
			9급	2	행정/녹지1, 녹지1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계		<u>17</u>	
		일반직	소계	<u>17</u>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7	행정5, 시설1, 운전1
			8급	<u>5</u>	<u>행정5</u>
			9급	1	행정1
안전건설국	건축주택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5급	1	시설1
			6급	5	행정/시설1, 시설4
			7급	<u>9</u>	행정2, 행정/시설1, 시설6
			8급	<u>7</u>	행정/운전1, 시설5, <u>공업1</u>
			9급	1	<u>행정/시설1</u>

## 【별표 2】

## 북구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의회사무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급	3	행정3
		6급	6	행정5, 속기1
		7급	6	행정1, 임기제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1
		8급	5	행정2, 행정/방송통신1, 운전1, 속기1
		9급	0	

## 【별표 5】

## 북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동 합계		121		
	농소1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3, 사회복지2,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계	17			
	농소2동	소 계	17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4, 사회복지1, 간호1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	계		18		
	농소3동	소 계	18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2, 행정/농업1, 사회복지1
			8급	9	행정5,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2
동	계		14		
	강동동	소 계	14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7	행정4, 사회복지1, 간호1, 행정/농업/해양수산1
			9급	2	행정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효문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9	행정6, 사회복지2,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송정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간호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동	양정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동	염포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별표 6】

**북구 기구표**(제3조 관련)

기구	국	과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4국	24과 95담당	1과 2전문(2담당)	1소 2과(10담당)	2소(7담당)	8동(16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사업소	동
	699	472	18	52	36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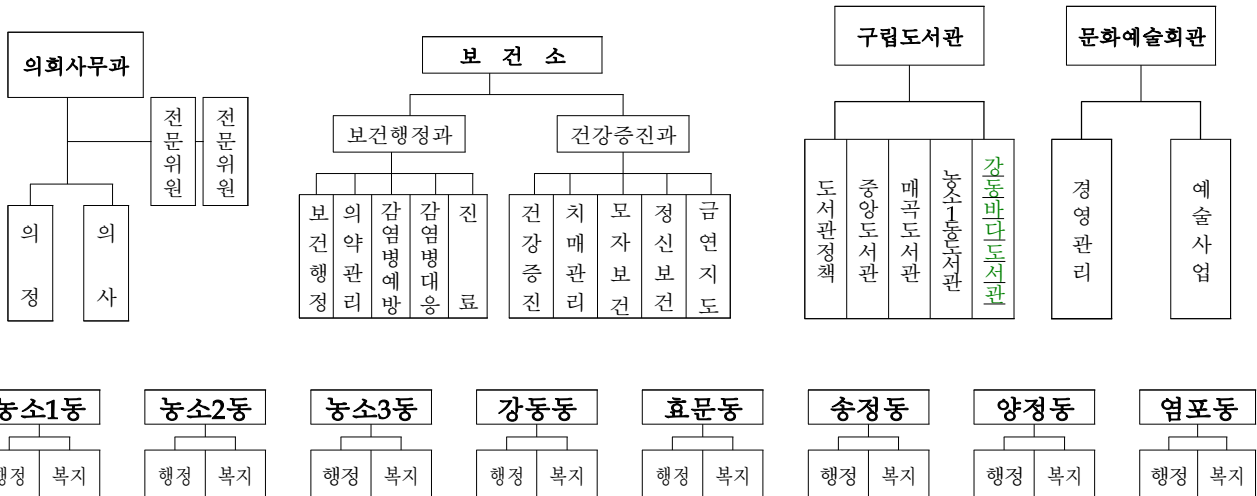
[범례]  
■ 이동  
■ 신설  
■ 명칭변경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701명(변동없음)

나. 본청 정원 조정(안 별표 1)

1)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

2) 기획예산과

가) 직급조정(행정6급 → 행정7급)

나) 직급·직렬조정(행정·보건8급 → 행정7급)

3) 미디어정보과

가) 감 2(행정·임기제행정 9급 △2)

4) 회계과

가) 직급조정(행정8급 2 → 행정7급 2)

5) 세무1과

가) 직렬조정(행정7급 → 행정·세무7급, 행정9급 → 행정·세무9급)

6) 총무과

가) 증 1(행정7급)

7) 주민자치과

가) 직렬조정(행정·사회복지7급 → 행정7급)

8) 문화체육과

가) 직렬조정(행정·공업8급 → 행정8급)

9) 교육청소년과

가) 증 1(사회복지8급)

나) 직렬조정 (행정·시설7급 → 행정7급)

## 10) 관광진흥과

가) 직렬조정(행정8급 → 행정·임기제 행정8급)

## 11) 복지정책과

가) 감 1(사회복지8급)

## 12) 노인장애인과

가) 직급조정(행정6급 → 행정7급)

## 13) 가족정책과

가) 직급조정(행정9급 → 행정7급,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8급)

## 14) 농수산과

가) 직렬조정(해양수산8급 → 행정·해양수산8급)

## 15) 자원순환과

가) 직급조정(운전7급 → 운전6급, 행정9급 → 행정8급)

## 16) 건설과

가) 직렬조정(공업7급 → 전기운영7급)

## 17) 도시과

가) 직급조정(시설·임기제시설6급  $\Delta 2$  → 시설·임기제시설7급 +2)

## 18) 교통행정과

가) 증 1(행정8급)

## 19) 건축주택과

가) 직렬조정(시설9급 → 행정·시설9급)

나) 직렬·직급조정(전기운영7급 → 공업8급)

**다. 의회사무과 정원 조정(안 별표 2)**

1) 직급조정(운전9급 → 운전8급, 속기9급 → 속기8급)

**라. 동 정원 조정(안 별표 5)**

## 1) 강동동

가) 직렬조정(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 행정5급, 행정·농업8급 → 행정·농업·해양수산8급)

2) 효문동

가) 직렬조정(행정·사회복지5급 → 행정5급)

마. 복구 기구표 개정(안 별표 6)

1) 담당 조정

가) 명칭변경

(1) 본청 : 관광개발 → 관광마케팅, 관광산업 → 관광개발(관광진흥과)

(2) 사업소 : 바다도서관 → 강동바다도서관(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24호

##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양정동)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7741번지	하천의 명칭	양정천
점용 내용	밭줄 쉽터 조성	점용 면적	400m <sup>2</sup>
점용 기간	2023. 6. 26. ~ 2099.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25호

##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 승인사항 고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받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합 계	588,042,321,510	593,490,831,714	511,918,619,294	81,572,212,420	
일 반 회 계	585,508,156,510	589,812,888,250	509,616,104,969	80,196,783,281	
기타특별회계	소 계	2,534,165,000	3,677,943,464	2,302,514,325	1,375,429,1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4,804,890	62,128,220	2,676,670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330,058,310	293,374,160	36,684,150
	폐기물처리시설	-	664,840	-	664,840
	주차장	2,147,898,000	3,282,415,424	1,947,011,945	1,335,403,479

#### ○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88,042,321,510	608,045,160,844	593,490,831,714	796,076,880	13,758,252,250
일 반 회 계	585,508,156,510	603,550,181,439	589,812,888,250	767,909,380	12,969,383,809
기타특별회계	2,534,165,000	4,494,979,405	3,677,943,464	28,167,500	788,868,441

## ○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합 계	588,042,321,510	511,918,619,294	42,446,055,370	8,886,041,589	24,791,605,257
일 반 회 계	585,508,156,510	509,616,104,969	42,446,055,370	8,841,683,529	24,604,312,642
기타특별회계	2,534,165,000	2,302,514,325	-	44,358,060	187,292,615

\* 보조금반납금 :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반납금

## ○ 결산상 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결산상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81,572,212,420	42,446,055,370	15,280,740,050	1,383,482,710	25,781,832,610	8,706,472,031	30,419,685,019
일반회계	80,196,783,281	42,446,055,370	15,280,740,050	1,383,482,710	25,781,832,610	8,662,113,971	29,088,613,940
기타특별회계	1,375,429,139	-	-	-	-	44,358,060	1,331,071,079

\* 보조금실제반납금 : 보조금수령액 대비 보조금반납금

## ○ 성과보고서

(단위 : 원)

## ○ 기금현황

(단위 : 원)

종 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7종	6,516,121,536	697,708,830	7,213,830,366

실 국 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 산 액	전 년 도 결 산 액	비 교 증 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8	74	141	22	100	19	511,918,619,294	500,031,767,178	11,886,852,116
기획조정실	1	15	31	5	21	5	17,081,206,120	28,814,250,748	△11,733,044,628
행정지원국	1	13	24	5	17	2	88,183,877,936	72,465,363,427	15,718,514,509
복지환경국	1	25	39	3	28	8	314,958,383,257	322,863,882,465	△7,905,499,208
안전건설국	1	15	34	6	25	3	60,108,359,449	51,691,459,633	8,416,899,816
의회사무과	1	1	3	2	1	0	1,878,945,408	1,659,320,366	219,625,042
보건소	1	2	3	0	3	0	20,892,496,825	17,295,010,810	3,597,486,015
구립도서관	1	1	2	1	1	0	6,822,926,819	3,026,991,269	3,795,935,550
문화예술회관	1	2	5	0	4	1	1,992,423,480	2,215,488,460	△223,064,980

○ 채권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634,278,510	68,497,630	76,075,840	1,626,700,300
일 반 회 계	1,403,708,880	-	-	1,403,708,880
기 타 특 별 회 계	1,457,360	1,294,090	1,201,290	1,550,160
기 금	229,112,270	67,203,540	74,874,550	221,441,260

○ 채무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계	787,670,347,712	36,658,116,820	1,457,443,903	822,871,020,629
행 정 재 산	785,955,375,037	35,901,619,920	1,235,348,403	820,621,646,554
일 반 재 산	1,714,972,675	756,496,900	222,095,500	2,249,374,075

##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811	8,279,233,000	57	342,033,000	868	8,621,266,000
정수물품	811	8,279,233,000	57	342,033,000	868	8,621,266,000

## ○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계	4	314,027,000	314,026,280	0	720
일반회계	4	314,027,000	314,026,280	-	720
기타특별회계	-	-	-	-	-

## ○ 성인지결산서

(단위 : 개, 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85	139,422,118,080	122,179,189,162	87.63%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35	92,780,103,000	90,484,701,572	97.53%
	일반회계	35	92,780,103,000	90,484,701,572	97.53%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성별영향평가 사업	소계	42	22,983,905,600	17,436,221,470	75.86%
	일반회계	41	22,686,208,600	17,140,361,190	75.55%
	기타특별회계	1	297,697,000	295,860,280	99.38%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특화 사업	소계	8	23,658,109,480	14,258,266,120	60.27%
	일반회계	7	23,656,609,480	14,256,766,120	60.27%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1,500,000	1,500,000	100.00%

##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원)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940,775,474,323	비 용	476,378,369,909
부 채	18,448,570,127	수 익	520,452,339,200
순자산	922,326,904,196	운영차액	(44,073,969,291)

※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과(T.241-7303, FAX.241-8689)으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126호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2020년 ~ 2025년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중산스포츠타운조성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축구장, 관리동, 주차장 등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북구청 문화체육과

○ 열람기간: 2023. 6. 29. ~ 2023. 7. 14.(15일간)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6. 29. ~ 2023. 7. 14.(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체육과 (☎052-241-7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괄 집계표

구 분		필지	구	답	도	임	전	제	계	비고
계	필지			1		13			14	
	면적			727		83,442			84,169	
구 분	국유지	필지								
		면적								
	사유지	필지			1		12		13	
		면적			727		83,251		83,978	
	공유지	필지					1		1	
		면적					191		19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북구중산동)(전체용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지번	지목	지적 (m <sup>2</sup> )	편입면 적 (m <sup>2</sup> )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 용	
1	북구	201-2	답	727	727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2	중산동	산99-1	임	1,283	1,283	울산 남구	이00 외 2인				
3		산124- 6	임	10,091	10,091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4		산125- 3	임	4,160	4,160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5		산126	임	9,223	9,223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6		산127	임	3,541	3,541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7		산127- 23	임	7,194	7,194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8		산127- 24	임	4,592	4,592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9		산127- 25	임	3,579	3,579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10		산127- 9	임	3,607	3,607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11		산132- 13	임	6,286	6,286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상완 료
12		산132- 2	임	191	191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				
13		산132- 15	임	18,868	18,868	부산시 금정구	최00				
14		산132- 16	임	10,827	10,827	부산시 금정구	최00				
합 계				84,169	84,169						
					14필지						

## 주 민 등 의 견 제 출 서

①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사업 (중산스포츠타운조성사업)		
② 사업장 위치 (토지지번)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 126번지 일원		
③ 사 업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④ 의견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편입지번		
⑤ 사업 등에 대 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6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사업계획서

## 1. 사업의 목적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주변지역은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육시설을 손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 126번지 일원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조성사업
- 과 업 명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 사업시행자의명칭 : 울산광역시북구청

## 5. 사업의 기간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6. 자금조달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19,700	6,800	3,221	5,579	4,100	
국 비	3,900		3,221	679		
시 비	4,550	400		2,100	2,050	
구 비	11,250	6,400		2,800	2,050	

## 7. 시설물 설치계획

- 중산스포츠타운(축구장, 관리동, 주차장 등) 조성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2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6. 29.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전력용 콘크리트 전주 1본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749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19m<sup>2</sup>
    - 2) 영구: 0.1m<sup>2</sup>
  - 나. 기 간
    - 1) 일시: 2023. 6. 29. ~ 2023. 7. 5.
    - 2) 영구: 2023. 7. 6. ~ 203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128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모바일테크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21, 906호(우정동, 혁신타워)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30, 892-165, 892-168, 892-169번지	하천의 명칭	상안천
점용 내용	우수암거 날개벽 설치 및 진입도로 포장	점용 면적	49m <sup>2</sup>
점용 기간	2023. 6. 28. ~ 2099.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2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6. 28.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15-23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63m<sup>2</sup>
  - 나. 기 간 : 2023. 6. 28. ~ 202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윤상\*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894호

# 공영주차장 무단 점유 적치물 이동명령(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적치물 자진이동(원상복구) 명령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 연고지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확인불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법적근거

- 가.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 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2. 공고사항 : 공영주차장 무단 점유 적치물 이동명령(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실시 계고

3. 공고기간 : 2023. 6. 26. ~ 2023. 7. 10. (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무단점유사항

소재지	무단점유 내용			비고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구유동 공영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55-5번지 외 2필지)	미 상	미 상	어망 등 어구 일체	

6. 상세내용 : 붙임 참조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2)

-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 상

주소 : 미 상

우리 구 구유동 355-5번지 외 2필지 위치한 공영주차장 내 귀하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위반하여 적치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하 소유의 무단 적치물을 **2023년 7월 10일**까지 **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55-5번지 외 2필지	어망 등 어구	어망등 어구 일체	어구 일체 강제철거

2023년 6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무단적치물(어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901호

#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2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대회개요

- 대회명 :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 일시/장소 : 2023. 8. 26.(토) 14:00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참가자격 : 연령 및 거주지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또는 모둠(팀별 4명 이내)
  - 연 령 : 2005년 8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2017년 이전 출생 아동까지
  - 거주지 :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또는 북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진행방식 : 예선(1차) → 본선(2차)
  - 예선(1차) : 접수된 정책제안서 서면평가
  - 본선(2차) : 정책제안 발표 및 심사(7개 모둠 내외)

### 2. 정책제안

- 주제 :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북구

< 정책제안 분야 >

- |             |            |          |
|-------------|------------|----------|
| ① 놀이와 여가    | ② 참여와 시민의식 | ③ 안전과 보호 |
| ④ 보건과 사회서비스 | ⑤ 교육환경     | ⑥ 주거환경   |

6가지 분야 중에서 아동 관련 정책 한가지 분야만 자유롭게 선택

- 주제에 따라 한가지 분야 선택하여 한개의 제안 작성

- 한가지 제안을 자세하고 심도있게 작성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7. 3.(월) 09:00 ~ 7. 28.(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mail 제출 ehdrjf0621@korea.kr)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정책제안서 1부(3매 이내), 정책제안서(요약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원별) 각 1부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 정책제안서(3매 이내), 정책제안서(요약본)은 한글파일 제출
- ※ 본선참가 확정팀은 발표자료(PPT형식) 추가 제출(2023. 8. 18.(금) 18:00까지)

### 4.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100점 만점 기준
  - 심사기준 항목 : 공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혜대상, 내용의 충실성
  - ※ 본선대회 심사 시, 발표준비 및 전달력 항목 추가 및 배점 조정
- 심사방법
  - 예선 : (서면평가) 제출된 자료를 심사기준에 따라 내부 자체 평가
  - 본선 : (심사위원회 및 아동평가단) 대회 당일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 5. 시상내용

구분	시상	표창(훈격)	시상금
합계	3개팀		50만원
최우수	1	북구청장	25만원(상품권)
우수	1	북구청장	15만원(상품권)
장려	1	북구청장	10만원(상품권)

### 6.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정책제안 접수	2023. 7. 3.(월) 09:00 ~ 7. 28.(금) 18:00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제출)
예선 결과 발표	2023. 8. 4.(금) 18:00 이후	개별 통보(7개 팀 내외)
본선 참가팀 사전교육	2023. 8. 7.(월) ~ 12.(토) 중 1일 예정	대면
본선참가자 발표자료(PPT) 제출	2023. 8. 18.(금) 18:00한	발표자료 미제출 시 본선참가 불가
정책제안 발표대회	2023. 8. 26.(토) 14:00	팀별 발표 5분 이내 (심사위원회 및 아동평가단 평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유의사항

- 정책제안서는 반드시 아동 개인 또는 팀이 직접 작성한 자료여야 하고, 교사, 부모, 보호자 등 대리 작성 발견 시 제출한 자료는 무효로 하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일·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
-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제안, 타 경연대회 또는 공모전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제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응모된 제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출품자(팀)에게 있음
- 응모된 제안은 전체 또는 일부 공개되며, 전체 또는 일부 제안은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공고내용의 해석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판단에 따르며, 사정에 따라 진행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시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시상 제안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제안 선정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모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8.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가족정책과 아동친화드림 담당자(☎ 052-241-7653)

- 붙임 1. 아동정책제안대회 참가신청서 1부.  
 2. 아동정책제안대회 정책제안서 1부.  
 3. 아동정책제안대회 정책제안서(요약본) 1부.  
 4.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부.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정 책 제 안 서**

제안제목	
팀 명	
정책제안분야	<p>( ) 놀이와 여가                      ( ) 참여와 시민의식            ( ) 안전과 보호 ( ) 보건과 사회서비스            ( ) 교육환경                      ( ) 주거환경</p> <p>※ <b>작성방법</b>(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 - 6가지 분야 중 <b>한가지</b>만 선택</p>
제안개요	<p>※ <b>작성방법</b>(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p> <p>1. 제안개요는 <b>한문장</b>으로 작성 <b>한가지 제안을 심도있게 작성(두가지 이상 제안 금지, 1분야 1제안)</b></p> <p>2. 맑은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서식 변경금지, 감점요인)</p>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p>※ <b>작성방법</b>(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p> <p>1. 제안하는 정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2. 제안하는 주제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인가를 확인 후, 시행되고 있다면 문제점·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 수정사항 등이 가능한지 생각해본다. 4. 정책제안(실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문제)인지 생각해본다. 5. 맑은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서식 변경금지, 감점요인)</p>
제안내용	<p>※ <b>작성방법</b>(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p> <p>1. <b>제안은 한가지를 자세하게 작성(두가지 이상 제안 금지, 1분야 1제안)</b></p> <p>2. 맑은 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 <b>3장 이내</b>로 작성 (서식 변경 금지, 감점요인)</p> <p>3. 제안하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제시 (정책 내용, 실현방법, 대상, 필요예산 등)</p>
기대효과	<p>※ <b>작성방법</b>(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p> <p>1.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면서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2.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었을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3. 맑은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서식 변경금지, 감점요인)</p>
기타	- 맑은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서식 변경금지, 감점요인)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정 책 제 안 서(요약본)**

제안제목	
팀 명	
정책제안분야	<input type="checkbox"/> 놀이와 여가 <input type="checkbox"/> 참여와 시민의식 <input type="checkbox"/> 안전과 보호 <input type="checkbox"/> 보건과 사회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 <b>※ 작성방법</b> (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 - 6가지 분야 중 <b>한가지만</b> 선택
<b>정책제안서 요약</b>	
제안개요	<b>※ 작성방법</b> (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 <b>정책제안서 제안개요를 한문장으로 요약하여 작성</b> - 맑은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서식 변경금지, 감점요인)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b>※ 작성방법</b> (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 <b>정책제안서 제안배경을 한문장으로 요약하여 작성</b> - 맑은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서식 변경금지, 감점요인)
제안내용	<b>※ 작성방법</b> (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 <b>정책제안서 주요내용을 1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b> - 맑은 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 (서식 변경 금지, 감점요인)
기대효과	<b>※ 작성방법</b> (작성방법 확인 후, 제출할 때 파란색 부분 삭제) <b>정책제안서 기대효과를 한문장으로 요약하여 작성</b> - 맑은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서식 변경금지, 감점요인)
기타	- 맑은고딕, 검정색, 크기 12pt, 줄간격 130%(서식 변경금지, 감점요인)

#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교(소속), 학년, 연락처, 주소, 단체명, 대표자명 등
수집 및 이용 목적	신청 건에 대한 팀별 식별과 아동정책제안대회 신청 요건심사, 평가 후 평가결과 알림, 신청대상 특성 확인, 아동정책제안대회 홍보 등을 통해 당회 아동정책제안대회 대회 운영과 차기 아동정책제안대회의 효율적인 홍보 방안 수립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해지 요청일 까지 (단,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5년 경과 후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활동사진, 활동내용, 성명, 학교, 학년
수집 및 이용목적	아동정책제안대회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해지 요청일 까지 (단,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5년 경과 후 삭제)

○ 위의 홍보물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보호자 성명, 연락처
수집 및 이용목적	아동정책제안대회 운영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해지 요청일 까지 (단,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5년 경과 후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 . . . . .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 . . . .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915호

#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7조제1항제13호~제15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 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세무2과
- 2) 전화번호 : 052)241-7526, 팩스번호 : 052)241-7519
- 3) 전자우편(E-mail) : back7371@korea.kr

### 6.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붙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를 “검사”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수수료의 감면)”을“(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5.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아니하는 제증명”을 “않는 제증명 등”으로, “날인하여야”를 “찍어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 확인·입찰참가신청 및 <u>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u>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검사</u>----- ----- ----- -----.</p>
<p>제2조(적용) <u>제증명 등</u>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조(적용) <u>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 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u>----- -----.</p>
<p>제7조(<u>수수료의 감면</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8. (생략)</p> <p>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p> <p>10. ~ 12. (생략)</p> <p>&lt;신설&gt;</p>	<p>제7조(<u>수수료의 감면 등</u>) ①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u>관한 법률</u>」----- -----</p> <p>10. ~ 12. (현행과 같음)</p> <p>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p>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  
청하는 경우

15.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  
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  
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② -----  
않는 제증명 등-----  
---- 찍어야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생략)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  
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